

담당	책임자
(실명확인)	

<지침서식 제1-2호>

거래외국환은행 지정(변경, 자동갱신) 신청서

지정인 성명(상호) : (인) 주민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 :
주소 : 전화번호 :
(E-Mail 주소 :)

대리인 성명 : (인) 주민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 :
주소 : 전화번호 :
(E-Mail 주소 :)
(해외교포여신취급 국외금융 기관명 :)

아래 항목에 대하여 귀행을 거래 외국환은행으로 지정(변경, 자동갱신)하고자 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바랍니다.

거 래 항 목	거 래 항 목
() 1. 거주자의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지급(연간 미화 5만 불 이내 자본거래 신고예외 포함) (제4-3조 제1항 제1호, 제7-2조 제8호) - 금년중 송금누계액(변경전 거래외국환은행의 확인) : US\$ - 매년 자동갱신 등록(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 <input type="checkbox"/> 해지)	() 57. 해외교포 등에 대한 여신관련 원리금 상환 보증, 담보제공 등(제7-18조 제3항)
() 2. 해외체재비(제4-5조 제2항)	() 59.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(제9-5조)
() 8.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보수, 소득 또는 연금 등의 금액 지급 및 연간 미화5만불 이하의 지급 (제4-4조 제1항 제3호, 제2항)	() 61. 거주자의 해외예금(제7-11조 제2항)
() 9. 거주자 등의 대북투자 (재경원고시 1995-23. 95.6.28)	() 62. 비거주자의 국내증권 발행 (제7장 제5절 제2관)
() 13.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자 등(제8-2조)	() 63.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(제4-7조)
() 14. 해외지사설치, 영업기금, 설치비, 유지활동비 지급 및 사후관리(제9장 제2절)	() 71. 거주자의 외화자금(외국인투자기업의 단기외화 자금 포함) 차입 및 처분(제7-14조)
() 16. 환전영업자(제3-2조 제4항)	() 72. 북한에 관광비용을 지급할 관광사업자 (재경부 고시 외관 41271-270.98.11.12)
() 32. 국내지사의 설치 영업자금도입 및 영업수익 대외송금(제9장 제3절)	() 74. 단체해외여행(연수)경비 등(제4-5조 제3항)
() 33. 상호계산 실시업체(제5-5조)	() 75. 해외이주비(제4-6조)
() 53. 거주자의 외화증권발행(제7-22조 제2항)	() 76. 거주자의 자금통합관리(제7-2조)
	() 77. 거주자의 원화자금 차입 및 처분(제7-15조)
	() 78.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의 취득 및 매각 (제9-39조 제2항)
	() 79. 거주자의 연간미화 5만불이하 자본거래 영수 (제7-2조 제9호)

변경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경유확인 : 은행 장 (인)

년 월 일

위 신청을 지정(변경지정, "01"항목 자동갱신 지정) 확인합니다.

KEB하나은행

지점장 (인)

